

# 검 토 보 고 서

충청북도 환경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건설소방위원회  
수석전문위원 김경형

## 충청북도 환경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 검 토 보 고 서

1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2017년 1월 6일

나. 회부일자 : 2017년 1월 10일

3. 제안이유

「환경분쟁조정법」 제7조에 따라 보궐위원의 임기를 삭제하는 등 위원회 구성사항을 변경하고,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회 위원을 우리 도 행정기구 직제에 맞게 조정하기 위함.

4. 주요내용

가. 충청북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 구성 변경(안 제2조)

나. 충청북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변경(안 제2조)

다. 위원회 보궐위원 임기 삭제(안 제2조)

5. 검토내용

가. 조례개정의 필요성

-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상위법령인 「환경분쟁 조정법」 과 우리도 행정기구 직제에 맞도록 위원회 위원 구성 사항을 반영하기

위해 조례 일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.

#### 나.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

- 상위법인 「환경분쟁 조정법」 제7조제2항은 ‘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’고 규정하고 있으며,
- 바이오환경국 업무는 정무부지사 소관으로 차후에 분장사무가 변경 되더라도 위원회 구성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구성사항을 변경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.

#### 다.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

- 조문의 표현은 조문 상호간에 상충되는 내용은 없으며, 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’에 맞추어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하였음.

## 6. 검토의견

「충청북도 환경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을 검토한 바, 「환경분쟁조정법」에 따라 보궐위원의 임기를 삭제하는 등 위원의 구성 사항을 변경하고,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회 위원을 우리 도 행정기구 직제에 맞추도록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.